

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번호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128</td>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2px;">1998. 12 기획경제위원회</td></tr> </table> 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8년 11월 11일, 서울특별시장</p> <p>나. 회부일자 1998년 11월 16일</p> <p>다. 상정일자 제16회 정기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(1998년 12월 18일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 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기획 예산실장 탁병오)</p> <p>가. 제안이유 노인종합복지관 5개소 신설에 따른 설치 및 위탁근거 마련하는 것임.</p> <p>나. 주요골자</p> <p>□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위탁근거 마련 (안 별표1·별표2)</p> <p>(1) 시립 중랑노인종합복지관 ※ 소재 : 중랑구 면목동 178-8 외 1 규모 : 대지 1,493㎡ 건물 2,371㎡</p> <p>(2) 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※ 소재 : 성북구 종암동 66-25 외 4 규모 : 대지 1,088㎡ 건물 2,595㎡</p> <p>(3) 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 ※ 소재 : 은평구 진관외동 산 140 외 8 규모 : 대지 12,099㎡ 건물 2,636㎡</p> <p>(4) 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 ※ 소재 : 강서구 등촌동 661-4, 규모 : 대지 1,142㎡ 건물 2,532㎡</p> <p>(5) 시립 마포노인종합복지관 ※ 소재 : 마포구 창천동 140, 규모 : 대지 1,286㎡ 건물 2,530㎡</p> <p>다. 참고사항</p> <p>□ 관계법규 :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※ 지방자치법 제95조(사무의 위임 등) ①~②(생략)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</p> <p>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 ④(생략)</p> <p>□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</p> <p>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동수)</p> <p>○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는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개별 조례로 설치 운영하고 있던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와 관리운영의 위탁근거를 단일 조례로 통합 규정 일원화하여 '98.7.1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로서</p> <p>○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토지취득을 시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건립하고 있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5개소(중랑, 성북, 은평, 강서, 마포)를 본 조례 제3조(명칭 및 위치) 및 제4조(운영의 위탁)의 규정에 의한 별표 1(서울특별시립공공시설), 별표 2(위탁사무)에 공공시설로 추가하여 위탁사무 근거를 마련하고, 아울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 직제규칙 개정('98.8.12)에 따라 공공시설과 위탁사무의 주관국(과)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필요한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</p> <p>4. 질의·답변 : 생략</p> <p>5. 심사결과</p> <p>○ 원안가결(재적의원 12명, 출석의원 8명 전원일치)</p> <p>6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별표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의안번호	128	1998. 12 기획경제위원회	
의안번호	128			
1998. 12 기획경제위원회				